

「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」  
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2013년 11월 27일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박 상 수

# 「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검토보고서

## 1. 안 건 명

「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## 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11월 15일 (금)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3.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

2013년 11월 19일 (화)

## 4. 관련근거

가. 「지방자치법」

나. 「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」

다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」

## 5. 개정이유

종이 수입증지가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대체되고, 수수료 납부 방법이 수입증지 외에 신용카드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.

## 6. 주요 개정내용

- 가. 수입증지와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수수료 납부 방법 변경 및 추가함(안 제3조).
- 다.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내용을 조례에 편입함(안 제5조~제7조).
- 라. 증명발급기 출력 서식에 맞게 별지를 수정함(별지 제2호서식).
- 마. 종이 수입증지 폐지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, 판매 및 교환 관련 규정을 삭제함(제8조~제12조).
- 바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.

## 7. 검토의견

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그간 사용하였던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되고 전자 이미지화한 형태의 수입증지가 도입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수입증지를 정의하며 그에 따른 납부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를 신설하여 수입증지와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,

안 제3조에서 수수료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에서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안 제5조와 안 제6조, 안 제7조는 수입증지의 규격, 계기 관리,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으로,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조례에 편입하였으며, 증명발급기 출력 서식에 맞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수정하고,

종이 수입증지 폐지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, 판매 및 교환 관련 규정인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를 삭제함.

기타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## 관계 법령

### ■ 지방자치법

**제136조(사용료)**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**제137조(수수료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**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3.21>

② ~ ③ 생략

### ■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

**제3조(수입증지요금계기 등에 의한 납부)** ① 서울특별시(이하 "시" 라 한다)에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요금계기(이하 "계기"라 한다), 신용카드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8.1>

1. ~ 5. 생략

## ■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

---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,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개정 '01.10.20, 2008.02.14, 2010.10.14]

**제2조(적용)**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. <개정 2010.10.14>

**제4조의1(납부방법)**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.